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유아(6세 미만) 전세버스 이용시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철저 안내

1. 서울시 버스정책과-16482호(2024.10.21.)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에서는 6세 미만 유아가 탑승하여 전세버스 이용 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여 운행하고, 차량이 상시적으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요청한 바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(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※ 불 임 : 서울시 공문 사본 1부.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
이사장 오 성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 172호 (2024.10.22) 접수 ()
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
전화 02-422-0019

전송 02-418-0071 /
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